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20228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한혜진

피고, 피항소인 1.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업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대표이사 김주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경지

2. 월통농업협동조합
파주시 월통면 위전리 423-4
대표자 조합장 사주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1가합121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학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농업은행 주식회사는 원고 전진희에게 825,260원, 피고 월통농업협동조합은 원고 강희숙에게 1,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선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 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정종관



판사

이숙연

이숙연



판사

김재형

김재형

